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25. 2017고합194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4인

【검 사】특별검사 박영수(기소, 공판), 특별검사보 양재식, 이규철, 장성욱, 파견검사 윤석열, 박주성, 조상원, 강백신, 김영철, 김해경, 문지석(공판)

【변호인】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외 2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5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, 피고인 3, 피고인 4를 각 징역 4년에, 피고인 5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,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각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,767,367,931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